

경찰 이해와 경찰 인권교육

오 완 호*

1. 경찰 기구(2006년 12월 현황)

다음에 크기에 맞게 편집하겠습니다.

* 한국인권행동 사무총장

II. 경찰 인력(2005년 6월 현황)

- 총 원145,494명
 - 경 찰 관93,273명(64.1%)
 - 전 · 의 경48,290명(33.2%)
 - 일 반 직 등3,931명(2.7%)

■ 경 찰 관93,273명

< 계 급 별 >

치안 총감	치안 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1	4	20	34	414	1,335	3,085	10,185	16,909	29,075	32,211
0.5%(473)								83.8%(78,195)		
16.2%(15,077)										

< 관 서 별 >

경 찰 청	부 속 기 관	지 방 청	경 찰 서	지 구 대
906 (1.0%)	851 (0.9%)	11,044 (11.8%)	38,943 (41.8%)	41,529 (44.5%)
			86.3%	

Ⅲ. 경찰 인권교육현황

경찰분야의 직무교육을 관장하는 총괄 기관은 경찰청 교육과이고 주무기관은 경찰청임. 경찰 직무교육은 경찰청 소속의 각 교육기관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육 대상은 경찰공무원(전·의경 포함) 전체이다. 경찰청 교육기관은 경찰대학, 경찰종합학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보안연구소, 지방경찰학교 등이며, 경찰분야의 인권 활동과 인권교육을 전담하는 부서는 '경찰청 인권보호센터'이며, 담당인력은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찰분야의 인권교육 계획은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인권교육 추진체계 확립, 경찰관 인권강사 양성 부분으로 크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경찰관이 연간 10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2005년 6월에 수립한 '경찰 인권교육 강화 기본계획'이 기본 내용이다.

경찰분야의 인권교육은 크게 경찰청 소속 교육기관(경찰대학, 경찰종합학교, 지방경찰학교 등)과 경찰서 2가지로 이루어짐. 2005년 경찰분야에서 진행된 인권교육 활동 실적은 아래 「표」 와 같음.

[표] 경찰분야 2005년도 인권교육 실시 현황

(2005.1.1-12.31)

합 계		경 찰 관 서		교 육 기 관 교 육	
횟수	연인원	횟수	연인원	과정	연인원
2,236회	293,992명	2,063회	259,183명	173개	34,809명

* 자료 : 경찰청 인권보호센터 보고 자료. 『2005년도 인권교육 실시 현황』

[표] 경찰분야 2006년도 인권교육 실적 목표

(단위:과정수, 명)

합계		경찰대학		경찰종합학교		중앙 경찰학교		수사보안 연구소		지방 경찰학교	
과정수	인원	과정수	인원	과정수	인원	과정수	인원	과정수	인원	과정수	인원
139	37,141	14	2,385	43	14,130	45	14,664	24	3,970	13	1,992

*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내부 자료(2006.2). 『경찰청 방문 결과 보고』 .

[표] 경찰분야 인권교육 현황

교육범주	교과목명	교육기관	교육대상	교육시간	강사
직무 분야와 관련한 인권교육	경찰과 인권	경찰대학	치안정책과정 경감·경정기본과정	7 5	외부
		경찰종합학교	경사·경위기본과정 간부후보생과정	7 7	외부
		중앙경찰학교	전·의경과정 신임교육과정	7 2	외부
		수사보안연구소	수사지휘과정 전문과정	7 2	외부
		지방경찰학교	인권과정	7	외부
	범죄피해자의 이해	경찰대학	치안정책과정 경감·경정기본과정	3 2	외부
		경찰종합학교	경사·경위기본과정 간부후보생과정	3 3	외부
		중앙경찰학교	신임교육과정	3	외부
		수사보안연구소	수사지휘과정 전문과정	3 2	외부
		지방경찰학교	인권과정	3	외부
	인권의 이해	경찰대학	전문과정	2	내부
		지방경찰학교	실무과정	2	내부
		경찰서	직장교육훈련	1	내부

IV. 경찰인권 교육방법론

1)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의 목표

○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의 주된 목표는 경찰공무원에게 인권이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이자 철학이라는 사실과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기본정신이라는 점을 이해하기 위함이다. 또한 경찰공무원에게 인권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직무 태도 및 실천능력을 배양시켜서 **인권 친화적 경찰문화**를 경찰조직 내에서 실현시킴이다.

○ 인신을 다루는 경찰공무원의 업무에서 인권보호가 최우선적 과제이며, 인권침해 시비가 발생할 때 국가 및 소속기관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준다는 사실과 인권침해 가해자가 될 때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한다.

2)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의 기본방향

○ 기존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은 경찰공무원의 권한남용에 의한 인권침해 또는 폭력 사용을 금지하는 차원에서 개별 인권침해의 예방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보다 바람직한 인권교육은 한 차원 높은 차원에서 경찰조직에 인권문화가 정착되게 해야 한다.

○ 경찰조직에 인권문화를 정착하게 하기 위해서는 경찰공무원의 인식을 획기적으로 재정립하고, 인권의 의미와 중요성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는 인권교육이 필요하다.

- 인권과 경찰업무가 상호 배타적이며 상충된다는 불합리한 생각을 바로잡아야 한다.
- 인권이 경찰의 직무수행을 어렵게 한다는 편견을 종식시켜야 한다.
- 기존 문화와 관행 속에 머무르고자 관성이 잘못된 생각임을 주지시켜야 한다.
- 공권력행사의 법적 한계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정립시켜야 한다.

3)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의 특성이해

○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과 같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권교육은 직무수행에 있어서 지켜야 할 인권관련적인 준칙과 방법을 습득시키고 해당 직무의 수행자로서 갖추어야 할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는 교육이기 때문에 수강생들이 호의적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교육담당자는 수강생들과 갈등적 위치에 서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임과 동시에, 비호의적인 수강생들의 태도를 변화시켜서 보다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경찰업무는 업무 경직성이 상당히 큰 분야에 속한다. 즉, 보안의 중요성이 우선적으로 강조되고, 상명하복의 조직문화가 강하며, 일상적 치안수요를 담당하기 때문에 업무량이 대단히 많은 분야이다. 따라서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경찰업무의 곤란성과 열악성을 우선적으로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경우에 따라서는 '인권교육'이라는 명칭 보다는 워크숍, 세미나, 인권감수성 향상 프로그램 등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수강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 갈 수 있다.

4) 경찰공무원 인권교육 시스템 이해

(1) 인권교육 전문가 양성과정과 직무교육으로서의 인권프로그램의 구별

o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은 내부의 인권교육 전문가 양성과정과 일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으로서의 인권교육으로 구별하여 진행된다.

- 인권교육 전문가 양성과정은 경찰 이외의 분야와 통합적으로 운영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론과 실습 및 견습의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의 과정이 요구된다.

- 직무교육으로서의 인권교육은 경찰공무원의 in-service 훈련 프로그램에 명확하게 제도화시키고, 그래도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의 인권교육 과정을 개설하는 것이 요구되는 바, 이러한 인권교육은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반복적 교육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

(2) 인권교육과정의 다양화

o 직무교육으로서의 인권교육은 교육대상자(실무직과 간부직)와 교육과정(보수교육과 신규교육)의 특성에 맞추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실제적이고 흥미로운 교육내용을 구축하는 것이 요구된다.

- 실무담당자에 대한 보수 인권교육에서는 인권감수성을 향상시켜 수용자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쪽으로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실무 경험을 존중하는 교육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유용하며, 수강생들 스스로 직무현장에서 경험한 인권실천 사례를 토의하는 프로그램은 그에 대한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 실무담당자에 대한 신규 인권교육에서도 인권감수성 향상은 빼 놓을 수 없는 교육 프로그램이 되어야 하며, 특히 경찰행정에 대한 애정을 진작시키는 맥락에서 수용자 인권에 대한 존중의 마음가짐을 교양시키는 것에 인권교육의 방향이 설정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수강생이 처음 경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권관련 쟁점에 관한 지식과 정보의 제공 역시 충실히 해 줄 필요가 있다.

- 정책결정자 내지 중간관리자에 대한 보수교육에서는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의 제고를 교육의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구체적인 교육내용에 있어서는 권한남용을 감시하는 자로서의 역할모형과 인권경찰을 선도하는 자로서의 역할모형 등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3) 동기부여 방법의 다양화

o 직무수행 상 지켜야 할 의무를 습득시키는 교육 프로그램은 어떤 직역을 대상으로 하든지 간에 수강생들의 호의적인 참여를 자발적으로 받아내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수강생들을 교육에 참여시키기 위한 일정한 동기의 부여가 필요한데, 인권 교육에 있어서 교육 대상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수강생들의 자존감에 호소하는 방법 이외에 승진 이력이나 소양 평가에 인권교육의 참여 및 결과를 포함시키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교육방법

o 인권교육과 같이 실천이 중시되는 교육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강의식 교육방법 보다 수강생들 스스로 논의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참여적 교육방법이 수강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킴으로써 교육의 성과를 높일 수 있다.

- 참여적 교육방법은 교육담당자와 수강생 간에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수반하는 교육방법이기 때문에 수강생의 규모가 최대한 30명을 넘지 않는 범위 내의 소규모인 것이 바람직하다.

- 구체적인 참여적 교육방법을 개발함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의 특성에 맞추어 응용할 필요가 있다.

o 수강생들에게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할 때에는 관념상의 사례가 아니라 현실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사례를 택하되, 직무수행에 있어서 해결의 곤란함을 겪을 수 있는 한계선의 사례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주의할 점은 사례를 통하여 수강생들에게 훈계하는 형태의 강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6) 교재개발의 방향

○ 인권교육에 사용되는 교재는 현장친화적인 교재여야 한다. 따라서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법규의 나열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담은 교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특히 경찰 업무에서 인권관련 이슈가 무엇인지 정리함과 동시에, 비판적 사고, 의사소통기술, 문제해결 기술, 협상기술 등과 같은 기초적 기술개발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 인권교육에 사용되는 교재는 수강생들의 인식전환에 중점을 둔 교재여야 하는 바, 인권개념의 현대적 발전을 고려하여 논의의 지평을 확대한 내용을 담고 있을 것이 요망된다. 즉, 신체의 자유에 한정하지 말고 인권 범주를 넓힐 필요가 있으며, 덧붙여서 여성, 노인, 성소수자, 장애인, 외국인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인권도 중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서적의 형태 뿐 아니라 다양한 교육매체를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영상교재의 개발이 적극 권장된다.

V. 지방경찰학교에서의 교육

1. 경찰지방학교에서의 인권교육시간 : 기본 50분 수업 / 휴식 10분/ 50분 수업으로 구성.
2. 수업은 대개 강의형태임.
3. 수강생 수 : 약 25명 -40명 내외이다.
4. 교육담당자 : 지방경찰청 교육계 (경무과 소속)의 교육계장 (직급: 경정) 및 약 4-5명의 담당 직원으로 구성된다.
5. 강사섭외의 형태
 - 교육 후 설문조사를 통한 강사의 강의 평가 및 강사에 대한 호감도는 차후 섭외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나, 대개 중간평가 이상이면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

- 교육은 교육계장의 권한으로 친경 인사 및 평소 친분이 있는 인사를 소개받거나 직접 섭외하는 것이 관행이다.
- 강사는 대개 학계의 교수, 변호사, 시민단체 관계자, 내부 강사로 구성된다.
- 대개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계는 경찰조직에 부담이 없는 인사를 강사로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6. 수강생들에 대한 이해

- 수강생들은 대개 시험을 통해 경찰이 된 비간부이며, 순경, 경장, 경사 등이다. 경찰중앙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경찰에 임용된 사람들이다. 비간부 출신이면서 경위로 승진한 사람, 간부후보생으로 경위로 임용된 사람, 경찰대 출신으로 경위에 임용된 사람들이 교육을 받는 경우도 있다.
- 지방경찰학교 수강생들은 현역 경찰로서 대구, 경북지역에서 경찰업무를 수행하는 경사, 경위 등이다. 풍속 영업담당/수사/정보/경비/교통/ 경사기본교육과정/ 경위기본교육과정 등, 1주일- 1일 교육과정 교육을 받게 된다.
- 수강생들은 현장 경찰업무에 시달리다 교육을 받게 되며 대개 ‘썰다’는 태도로 교육에 임한다. 나이는 30-50대로서 편차가 심하며, 교육에 임하는 자세도 제 각각이다. 수업 중 코를 골며 자는 사람도 있으며, 교육을 매우 힘들어 한다.
- 수강생들은 대체로 경찰이라는 직업에 만족하는 편이며, 경찰 업무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해함과 동시에, 경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 불만 사항을 자주 표현한다.
- 경찰조직은 매우 급격한 개혁을 수행해온 조직이며, 변화가 매우 빠른 조직이다. 특히 20-30대 경찰들은 대개 대학 졸업 후 70:1정도의 시험을 통해 채용된 사람으로 매우 개혁적이며 이해력이 높은 편이다. 반면 40-50대의 상대적으로 경찰들은 시대변화에 둔감하다.
- 경찰업무의 특성상 정보/ 수사/보안/ 교통/ 지구대 근무 등으로 경찰업무는 분화되어 있는데,

84 인권비로라 실천

수강생들의 업무분야에 따라 매우 다양한 편차를 보인다.

○ 경찰은 대사회 접촉이 가장 많은 부처로 현실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이해력이 매우 높은 집단이다. 사회여론을 형성하고 주도하고 있으나, 잘 드러나지 않는 집단이다.

7. 수강생들에게 민감한 사항들

○ 수강생은 경찰 처우, 노조 또는 직장협의회 구성, 수사권독립, 경찰청의 고위정책, 승진 문제, 정치인의 민감한 발언, 국가인권위의 권고 및 정책, 검찰과의 관계 등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 수강생들은 경찰에 대한 비판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경찰 업무의 열악함과 어려움에 대해 강사가 몰이해한다고 생각되면 거칠게 항의한다. 지구대에서의 주취자들의 행패, 음주단속의 어려움, 수사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토로한다.

○ 가급적이면 민감 사항에 대한 강사의 입장표명은 삼가는 것이 좋다.

8. 경찰 문화에 대한 이해

○ 남성문화 (경찰전체 중 여경의 비율이 4%정도 임.)

○ 군사문화 (계급사회/ 상명하복/ 획일성/ 준군사조직 ..)

○ 비밀주의 (정보/ 보안업무의 보편화 경향)

○ 권위주의 (의식주의와 냉소주의의 공존)

○ 집단주의 및 가족주의

9. 경찰 인권교육에 강의기법

○ 편안한 강의를 하라.

- 목소리 톤은 크게 하라.
- 농담 및 유머를 이용하라.
- 국민을 위해 수고하고 있다는 점을 칭찬하라.
- 경찰업무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경찰 편에 서있다는 태도를 보여라.
- 강사가 강조할 부분은 매우 강하게 표현하고, 반발에 있을 때 매우 단호한 입장을 취하라.
- 간혹 직접 개별 수강생에게 질문하고, 의견을 존중한다는 태도를 보여라.
- 강의 끝부분에 당부의 말을 남겨라.

9. 경찰의 고충이해.

- 계급사회의 비애
- 승진 적체현상
- 소외된 지방경찰
- 경찰의 권위에 도전하는 시민들
- 과도한 업무

10. 경찰 인권교육 강의에 포함될 내용들

- 인권의 정의
- 인권의 역사. (한국현대사 중 중요 인권신장 사건에 대한 소개 포함)

o 차별행위에 대한 이해 (가정/ 직장/ 군대/ 학교/ 국가 등에서 발생하는 사례소개)

o 인권보호를 위해 경찰이 노력해야 할 사항들

- 경찰관 직무 집행법상 불심검문의 준수
- 임의동행 시 서면동의.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수칙/ 경찰청 훈령)
- 고문 및 가혹행위의 근절/ 폭언 및 반말 사용금지
- 미란다 원칙 준수
- 친절과 봉사정신의 강조.
- 수사에 있어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원칙의 준용
영장청구 시에는 신중해야 함을 강조
- 사건 청탁 및 금품수수는 반드시 처벌됨을 강조
- 유치장에서 인권보호
- 대국민 이미지 개선활동의 중요성 강조
- 기타

o 경찰 권리를 위해 노력해야 할 사항들

- 경찰청장의 직위를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문제
- 경찰 처우, 급료, 근무조건, 의사소통 및 내부 민주화를 위한 선행 과제 지적
(노조 및 직장협의회 등의 결성 필요성 인정)
- 수사권 조정 및 독립의 당위성 설명
- 진급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안의 필요성 (직급 단순화의 필요성 강조)
- 근무환경 개선의 필요성 강조
- 성희롱 예방 교육의 필요성 강조
- 기타